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시행 2025. 7.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34호, 2025. 7. 3.,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7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별표1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한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의 부지 및 시설 등

○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 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보전

나. 기본방향

○ 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

○ 특화분야(ICT융복합 부품소재)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술핵심기관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 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

1) 지구별 현황 및 기능

지 구 명		면적(km ²)	기 능
합 계		1.73	
R&D 거점지구	한양대학교 ERICA,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 업단지)	0.84 (0.08)	· 기술사업화 핵심 지식서비스 지원 거점 -연구개발·시험생산 및 사업화
사 업 화 촉진지구	경기테크노파크,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안산연구센터) 등	0.18	· R&D거점지구와 연계한 사업화 전문서비스 지원 -사업화 서비스 지원, 입주공간 지원
사 업 화 거점지구	시화 MTV 산업단지(일부)	0.71	· 생산성 확대를 위한 제조혁신 추진 -첨단기술기업 지정 및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관리
-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

3) 주거구역

- 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 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

4) 상업구역

- 과도한 인구 및 교통집중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상업구역을 유도
- 주거구역 및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5) 산업시설구역

-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적정용지구모의 설정이 필요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한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6) 녹지구역

- 녹지구역은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

라. 입주관리

- 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등을 준용하되, 「연구개발특구법」 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 함
- 기존 입주건축물(존치건축물)
 - 강소특구 관리계획 고시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이하 '존치건축물') 등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을 증설(증축 포함) 가능
 - 존치공장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기업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단,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 「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함
- 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
- 특구 내 입주기관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면적

가. 목적

- 「연구개발특구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및 단원구 성곡동 일원
 - 면적 : 1.73km²
 - R&D거점지구(한양대에리카 캠퍼스) : 0.84km²
 - ※ (한양대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 0.08km²)
 - 사업화촉진지구(경기테크노파크 등) : 0.18km²
 - 사업화거점지구(시화MTV산업단지 일부) : 0.71km²

다. 특구관리

- 근거법률 : 「연구개발특구법」제34조
-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입주관리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설치 :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관리 : 해당 지자체 등

라. 추진경위

-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3호, 2019. 08. 07.)
-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26호, 2023. 08. 23.)
- 세부 지구별 추진경위
 - R&D거점지구(한양대에리카 캠퍼스, 안산시 고시 제2021-277호, 2021. 11. 16.)
 - R&D거점지구(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34호, 2024. 12. 31.)
 - 사업화촉진지구(경기테크노파크 등, 안산시 고시 제2024-261호, 2024. 11. 06.)
 - 사업화거점지구(시화MTV산업단지 일부,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4-116호, 2024. 07. 05.)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가. 토지용도 구분

구 분	용도지역	토지용도구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729,958.6	100.0	
R&D 거점지구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 산업단지)	소 계		840,605.9	48.6	
	자연녹지지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760,871.4	43.9	대학교
		녹지구역	1,129.5	0.1	176호 주차장
	준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48,776.0	2.8	
		산업복합구역	11,335.0	0.7	
		산업공공시설구역	14,149.0	0.8	도로, 주차장
		녹지구역	4,345.0	0.3	소공원
사업화촉진지구 (경기테크노파크 등)	자연녹지지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78,476.7	10.3	연구시설
사업화거점지구 (시화MTV산업단지)	소 계		710,876.0	41.1	
	준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27,949.3	1.6	
		산업공공시설구역	11,143.7	0.6	도로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538,168.9	31.2	
		산업지원구역	19,760.6	1.2	주차장, 전기 공급설비
		산업공공시설구역	101,150.9	5.8	도로
		녹지구역	12,702.6	0.7	근린공원

※ 별첨 1. 토지용도구분도

나.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입주자격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별표1의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
- 입주계약
 - 「연구개발특구법」 제37조 및 영 제33조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시험공장의 설치

정의	· 입주기관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산업집적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항에 의한 실험실 공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
허용 범위	· 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험공장의 면적은 임차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됨
사후 관리	· 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2) 산업시설구역

- 관련규정 :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34호, 2024. 12. 31.)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6호, 2024. 07. 05.)

○ 입주자격

- R&D거점지구(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육성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자 ·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자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련 법령(「주차장법」 등) 및 안산시 관련 조례에 따라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사업화거점지구(시화MTV산업단지 일부)

공공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산업육성구역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 아래 표에 명시한 입주대상업종(임차기업 포함)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 다만, 우선순위에 해당 되어도 입주심사 결과 입주가 부적격한 기업은 신규 입주를 제한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최초 분양에서 제외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후에만 가능하며 시화MTV단지내 입주업종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 함 · 창고·운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분양대상 제외 및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업종변경의 경우에는 부지면적 3,300㎡ 이상에 한함
산업육성구역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시화MTV단지는 환경오염방지 및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배출시설제한지침”을 배제하고, 환경관련법규 및 경기도 환경조례를 적용하며 환경영향평가상 대기오염물질 할당량에 따른 입주심사 결과에 따라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산업지원구역	·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입주제한업종 제외) · 관리기관 등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 전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특정용도에 한 함)
산업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

○ 입주우선순위

- R&D거점지구(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1. 1순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2. 2순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등을 건설하여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임대하려는 자
 3. 3순위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로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 임대하려는 자(산학협력을 위해 제공하는 공간 포함)
 4. 4순위 :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창업생태계 조성, 산학협력 활성화 또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자
- ※ 입주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제 4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 【특기사항】**
- ※ 동일순위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 관련 법규 및 사업시행자의 처분계획에 의해 결정한다.

※ 본 사업은 대학부지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 후 임대하는 사업으로 분양 불가

- 사업화거점지구(시화MTV산업단지 일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공장

구 분	과밀억제권역(반월·시화단지 포함)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우선순위	1	2	3

- 공공사업으로 철거되어 이전하는 공장
- 수도권 외 지역에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공장
- 반월·시화단지 내 등록된 공장의 확장 공장(분공장)
- 기타 신·증설 공장
- 입주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동일순위 중 우선순위(평가표는 점수로 환산)
 - 환경 유해정도에 따른 우선순위 : 대기, 수질 등 배출시설과 유독물, 폐기물 사용 및 배출 관련 여부와 사업장폐기물 재활용기업 우선
 - 기업규모에 의한 우선순위 : 조성계획상 대필지 설계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우선
 - 재무안전성에 따른 우선순위 :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매출순이익 등
 - 전년도 수출액이 많은 기업 우선
 - 녹색인증기업,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의장), ISO14000 인증기업,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기업 등 가산점 부과
 - 입주우선순위 및 동일순위 중 우선순위까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및 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순위를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음

○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R&D거점지구(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공통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산업 육성 구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시설 「산업집적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포함) 「산업집적법」에 의한 도시형공장 「벤처기업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산업시설용지 4 에 한함) * 지원시설이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에 따르며, 지원시설의 비율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을 준용함
산업 복합 구역	[산업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시설 「산업집적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포함) 「산업집적법」에 의한 도시형공장 「벤처기업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지원시설이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에 따르며, 지원시설의 비율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을 준용함 [지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아래의 용도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육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중 예식장 및 회의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 및 해당 도시첨단산업단지(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상점)의 바닥면적 총합은 전체 연면적의 20%이하로, 2층 이하에만 입지할 수 있음
산업 공공 시설 구역	[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해당도시첨단산업단지(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에 한함 *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30% 이하 [기타공공시설] - 기타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시설

- 사업화거점지구(시화MTV산업단지 일부)

공통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산업 육성 구역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 - 창고·운송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관련 시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연구시설 등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산업 지원 구역	- 전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과 그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산업 공공 시설 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로서 공용의 청사 등

○ 입주대상 업종

- R&D거점지구(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공통	- 부동산 임대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전체 임대 불가) - 신탁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산업 육성 구역	공통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해당 구역의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 권장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재된 업종 중 20, 21, 26, 27, 28, 29, 30, 31에 해당하는 첨단업종 입주 권장 * 첨단업종 및 첨단기술·제품의 경우 산업육성구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구역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하여 적용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첨단 제조 산업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 C21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C28 전기장비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산업 육성 구역	첨단 연구 산업	• J58 출판업 •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J63 정보서비스업 • M70 연구개발업 • M71 전문서비스업 •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M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N75 사업지원서비스업 • P85 교육서비스업
산업 복합 구역	첨단 연구 산업	• J58 출판업 •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J63 정보서비스업 • M70 연구개발업 • M71 전문서비스업 •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M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N75 사업지원서비스업 • P85 교육서비스업
입주 제한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1중사업장부터 4중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및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 한 해 허용)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물질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서 정하는 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나'지역 기준으로 그 외 물질은 '가'지역 기준 이내로 1차 처리 후 연계처리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업체에 한해 허용) •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약취배출시설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저장하는 공장

- 사업화거점지구(시화MTV산업단지 일부)

산업 육성구역	공통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최초 분양에서 제외되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만 가능하며, 시화MTV단지 내 입주업종을 유치하는 경우에 해당됨 • 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 •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401, 49301, 49302, 49303 - 분양대상 제외 및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업종변경의 경우에는 부지면적 3,300㎡ 이상에 한함 •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해당 구역의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 권장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재된 업종 중 20, 23, 24, 26, 27, 28, 29에 해당하는 첨단업종 입주 권장 ※ 첨단업종 및 첨단기술·제품의 경우 산업육성구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구역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하여 적용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 첨단업종 -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 27, 29 업종
	• IT 업종 -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컴퓨터, 정보기기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 26, 28 업종

산업 육성구역	• 신소재 업종 - 신소재, 정밀화학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 20, 23, 24 업종 (중분류상 233, 239 산업단지 내 입주부적격 업종 제외)
	• 복합시설 업종 -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 581, 582, 5911, 612, 620, 631, 701, 71393, 72, 7320, 75994 * 제조업(지식산업센터 포함) 입주(영위) 불가

산업 지원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 용도로 특정	
------------	---	--

※ 별첨 2. 업종배치계획도

○ 입주계약

- 「산업집적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격에 부합해야함

○ 임대분양용지관리

- 산업단지 내 임대분양용지관리는 「산업집적법」 등 관련법령, 산업단지 관리지침, 경기 안산 강소특구 관리계획 및 입주(분양)계약서에 따름

3) 녹지구역

○ 관련규정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6호, 2024. 07. 05.)

○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위(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

○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및 관련 부대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관

1) 총괄표

구분	개소	면적 및 규모	관리권자	비고
도 로	14개 노선 (67개 노선)	L= 4,260m A= 112,294.6 ㎡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시화MTV 산업단지 일부
주차장	1개소 (12개소)	3,600.0㎡		
공 원	1개소 (15개소)	12,702.6㎡		
전기공급설비	1개소	16,160.6㎡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학 교	1개소	839,476.4㎡	교육부 및 대학 재단 등	한양대학교에리카 캠퍼스
주차장	1개소	1,129.5㎡	안산시	176호 주차장
도 로	3개 노선	L= 675m A= 12,949㎡	교육부 및 대학 재단 등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공 원	1개소	4,345㎡		
유수지	1개소	1,015㎡		
연구시설	4개소	178,476.7㎡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경기 TP 등

※ ()는 시화MTV 산업단지의 전체 개소수임

※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내 중복 지정된 사항임

2) R&D거점지구(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 공공·문화시설(학교) 결정 조서(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전체	강소특구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대학교	사동 1271 일원	1,297,988.6	839,476.4	건설 제1985-399호 (1985.09.17)	

- 세부조성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율(%)		비 고
		전체	강소특구	전체	강소특구	
합 계		1,297,988.6	839,476.4	100.0	100.0	대학교
교사부지	사동 1271번지 일원	442,120.5	442,120.5	34.1	52.6	
운동장	사동 1271번지 일원	93,095.0	93,095.0	7.2	11.1	
도로	사동 1271번지 일원	131,343.6	131,343.6	10.1	15.6	
녹지	사동 1271번지 일원	479,293.0	20,754.8	36.9	2.6	
주차장	사동 1271번지 일원	73,557.5	73,557.5	5.7	8.8	
도시첨단산업단지	사동 1271번지 일원	78,579.0	78,605.0	6.0	9.3	

○ 교통시설(176호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전체	강소특구		
176호 주차장	노외주차장	사동 1271-22 일원	11,593.0	1,129.5	안산시 제2018-176호 (2018.10.31.)	

○ 교통시설(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	675	12,949	-	-	-	2	573	11,691	1	102	1,258	
중로	3	675	12,949	-	-	-	2	573	11,691	1	102	1,258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구 간		사 용 형 태	주 요 경 과 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구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1	중로	2	1	20	집산도로	421	대학교시설내 도로	광로 3-8	일반도로		국교부 제 2020-747 호 (2020.10.27.)	중점 부도로 모퉁이 반영
2	중로	2	2	20	집산도로	152	대학교시설내 도로	중로 3-1	일반도로		국교부 제 2020-747 호 (2020.10.27.)	
3	소로	3	1	12	국지도로	102	중로2-2	중로 2-1	일반도로		국교부 제 2020-747 호 (2020.10.27.)	

○ 공간시설(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1	공원	소공원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번지 일원	4,345.0	유수지 중복결정

○ 방재시설(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1	유수지	저류시설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번지 일원	1,015.0	소공원 내 중복결정

3) 사업화촉진지구(경기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 연구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전체	강소특구		
합 계			191,686.4	178,476.7		
1	연구시설	사동 1271-11번 지	66,655.9	66,655.9	01.11.9.	경기테크노파크
2	연구시설	사동 1271-12번 지	32,511.0	32,511.0	03.07.2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연구시설	사동 1271-18번 지	59,705.7	46,496.0	04.06.2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연구시설	사동 1271-19번 지	32,813.8	32,813.8	04.06.21	한국전기연구원

4) 사업화거점지구(시화 MTV 산업단지 일부)

○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4	7,315 (4,755)	138,766.2 (112,294.6)	6	5,021 (1,966)	112,790.5 (66,625.5)	-	-	-	8	2,789	45,669.1	
종로	14	4,706 (4,755)	138,766.2 (112,294.6)	6	5,021 (1,966)	112,790.5 (66,625.5)	-	-	-	8	2,789	45,669.1	

주) ()의 면적 및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구 간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1	중로	엘티브이 1	86	21	집산 도로	2,914 (305)	중로 엘티브 1-126	중로 엘티브 1-54	일반 도로			
2	중로	엘티브이 1	88	21	집산 도로	369 (264)	지구계(북측)	중로 엘티브 1-53	일반 도로			
3	중로	엘티브이 1	89	21	집산 도로	378 (288)	중로 엘티브 이 1-53	중로 엘티브 이 1-135	일반 도로			
4	중로	엘티브이 1	90	21	집산 도로	475	중로 엘티브 이 1-135	중로 엘티브 이 1-89	일반 도로			
5	중로	엘티브이 1	91	21	집산 도로	646 (496)	중로 엘티브 이 1-135	중로 엘티브 이 1-89	일반 도로			
6	중로	엘티브이 1	104	21	집산 도로	239 (138)	지구계(북측)	중로 엘티브 이 1-53	일반 도로			
7	중로	3	57	12	국지 도로	967	중로1-91	중로3-59	일반 도로			
8	중로	3	58	12	국지 도로	151	중로1-91	중로3-59	일반 도로	수변공 원 49		
9	중로	3	59	12	국지 도로	495	수변공원 49	중로1-89	일반 도로			
10	중로	3	60	12	국지 도로	90	중로3-59	중로1-87	일반 도로			
11	중로	3	73	12	국지 도로	231	중로 1-88	완충녹지 69	일반 도로			
12	중로	3	74	12	국지 도로	201	중로 1-53	중로3-73	일반 도로			
13	중로	3	75	12	국지 도로	354	중로1-88	중로1-53	일반 도로			
14	중로	3	79	12	국지 도로	300	중로1-53	중로1-104	일반 도로			

주) ()의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장임

- 주차장 결정 조서

구 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1	노외주차장	IT산업지구 내	3,600.0	안산시

○ 공간시설

- 공원 결정 조서

구 분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1	근린공원	중로엘티브이 1-89호선변	12,702.6	안산시

○ 유통 및 공급시설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1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엘티브이 제12호 하천 우측변	16,160.6	안산시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가. 녹지의 보전

○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 및 보전해야함

나. 환경의 보전

○ 환경 관리

- 입주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 안전 관리

-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주기관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일몰기한 설정

가. 재검토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5-34호,2025.7.3.>

1. 이 계획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